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4
----------	-----

제출년월일 : 1999.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법률 제5,839호에 의한 공중위생관리법의 공포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업종의 신고사항이 통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법률에 의한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로 정한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의 수수료규정을 삭제(안 별표1)

☐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제2호중 바란의 (1) 내지 (3)을 삭제하고 (4) 내지 (16)을 (1) 내지 (13)으로 하며 아란중 (3)의 (가) 내지 (마)를 삭제하고 (바) 내지 (아)를 (가) 내지 (다)로 하며 동란 (4)의 (가) 내지 (마)를 삭제하고 (바) 내지 (아)를 (가) 내지 (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 8. 9일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동	음·면					동	음·면					동	음·면								
아. 공중위생업 관계 (1)~(2)<생 략> (3) 신규신고 (가) 숙박업												아. 공중위생업 관계 (1)~(2)<현행과 같음> (3) 신규신고 <삭 제 >												
① 호텔업					1건	90,000	70,000																	
② 콘도미니엄					1건	90,000	70,000																	
③ 여관업					1건	30,000	25,000																	
④ 여인숙업					1건	8,000	3,500																	
(나) 목욕장업																								
① 공동탕업					1건	10,000	6,000																	
② 가족탕업					1건	10,000	6,000																	
③ 한증막업					1건	10,000	6,000																	
④ 사우나탕업					1건	50,000	40,000																	
⑤ 터기탕업					1건	50,000	40,000																	
⑥ 복합목욕탕업					1건	50,000	40,000																	

(다) 이용업 및 미용업	1건	10,000	2,300	<삭제>	
(라) 위생관리용역업	1건	3,500	2,300	<삭제>	
(마) 세탁업	1건	3,500	2,300	<삭제>	
(바) <생략>				(가)<현행(바)란과 같음>	
(사) <생략>				(나)<현행(사)란과 같음>	
(아) <생략>	1건	3,500	2,300	(다)<현행(아)란과 같음>	
(4) 변경신고				(4) 변경신고	
(가) 숙박업				<삭제>	
① 호텔업	1건	45,000	35,000		
② 료도미니엄	1건	45,000	35,000		
③ 여관업	1건	15,000	13,000		
④ 여인숙업	1건	4,000	2,000		
(나) 목욕장업				<삭제>	
① 공동탕업	1건	5,000	3,000		
② 가족탕업	1건	5,000	3,000		
③ 한증막업	1건	5,000	3,000		
④ 사우나탕업	1건	25,000	20,000		
⑤ 터기탕업	1건	25,000	20,000		
⑥ 복합목욕탕업	1건	25,000	20,000		

(다) 이용업 및 미용업	1건	5,000	1,200	< 삭제 >				
(라) 위생관리용역업	1건	2,300	1,200	< 삭제 >				
(마) 세탁업	1건	2,300	1,200	< 삭제 >				
(바) < 생략 >				(가) < 현행(바)란과 같음 >				
(사) < 생략 >				(나) < 현행(사)란과 같음 >				
(아) < 생략 >				(다) < 현행(아)란과 같음 >				
(5)~(7) < 생략 >				(5)~(7) < 현행과 같음 >				